

공 시 송 달 공 고

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3호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고명칭 :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 : 2020. 3. 31. ~ 2020. 4. 14. (15일간)
3. 공시송달 대상자

성 명	주 소	내 용	송달불능 사유
김*희	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로	행정처분 결정통지 (보육교사 자격취소)	폐문부재

4. 법적근거 : 영유아보육법 제48조

5. 유의사항

-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고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또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며,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가족보육과(☎031-8036-749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. 03. 31.

오 산 시 장

